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0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국방개혁 2.0 추진과제인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계획에 따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근무지원 대상부대 명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근무지원 대상부대 명시 최소화(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)

대상부대 명칭 변경 및 창설·해체시마다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“육군본부·해군본부·공군본부·육군교육사령부·육군종합군수학교·육군정보통신학교·합동군사대학교·국군간호사관학교”를 “육·해·공군본부 등 계룡·유성 지역 부대”로 정비

다. 단장 정원 조정(안 제3조 제1항)

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제1항 단장은 “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”를 “2급 이상 군무원으로”로 수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

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육군본부·해군본부·공군본부·육군교육사령부·육군종합군수학교·육군정보통신학교·합동군사대학교·국군간호사관학교”를 “육·해·공군본부 등 계룡·유성 지역 부대”로 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육군본부·해군본부·공군본부·육군교육사령부·육군종합군수학교·육군정보통신학교·합동군사대학교·국군간호사관학교”를 “육·해·공군본부 등 계룡·유성 지역 부대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”를 “2급 이상 군무원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설치) <u>육군본부·해군본부·공군본부·육군교육사령부·육군종합군수학교·육군정보통신학교·합동군사대학교·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 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.</p>	<p>제1조(설치) <u>육·해·공군본부 등 계룡·유성 지역 부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임무) 계룡대근무지원단(이하 “근무지원단”이라 한다)---.</p> <p>1. <u>육군본부·해군본부·공군본부·육군교육사령부·육군종합군수학교·육군정보통신학교·합동군사대학교·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(이하 “각군본부등이라 한다)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관리 및 경호·경비</p>	<p>제2조(임무) 계룡대근무지원단(이하 “근무지원단”이라 한다)---.</p> <p>1. <u>육·해·공군본부 등 계룡·유성 지역 부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단장 등) ① -----, 단장은 <u>장성급(將星級) 장교</u>로, -----.</p>	<p>제3조(단장 등) ① -----, 단장은 <u>2급 이상 군무원</u>으로, -----.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748 - 6577